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326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06월 10일
제출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내 세월호 기억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공익시설인 '세월호 기억공간'의 설치 허가 연장 및 무상사용을 추진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2항, 제24조제1항제4호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호, 「서울특별시 4·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,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서울 중구 세종대로125
- 사용자 : (사)4.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18.73㎡
- 사용허가 기간 : 2022.07. 01. ~ 2024. 6. 30.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'세월호 기억공간'은 세월호 기억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공익시설로서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라 이전하는 기존 공익시설의 이전하는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.
- (사)4.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'세월호 기억공간'의 존치기간

만료일(2021.11.3.~ 2022. 6.30.)이 도래됨에 따라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신고하였으며, 이에 중구청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교부함(2022. 04. 26).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
-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7조 제5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2항, 제24조제1항제4호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호, 「서울특별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」 제3조 및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2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1.12. 2.)
 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3호
 - 심의결과 : ‘조건부 적정’ (공유재산 사용료 면제)
<조건사항 -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후
사용료 감면을 추진 할 것>

- 제303회 정례회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
사용료 면제 동의안」 본회의 의결('21. 12. 21.)